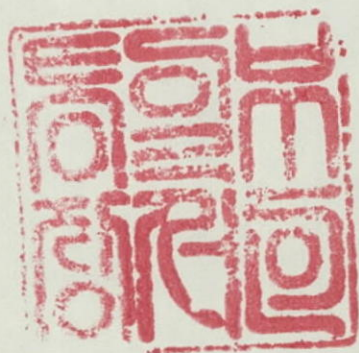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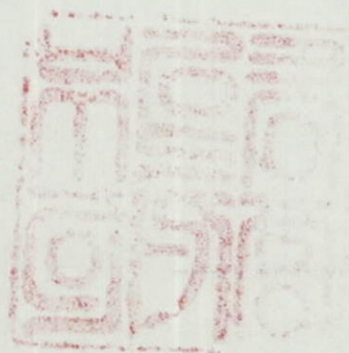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목차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4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배경은 군사적 의도보다 경제실리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6
정부는 영해주권을 지키는데 추호도 흔들림 없이 대처했습니다	8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으로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었습니다	10
비무장 선박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닙니다	12
연평해전에서 보듯이 무력도발에 무력으로 응징한 것은 「국민의 정부」뿐입니다	14
북한선박에 대하여 무조건 무해통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16
정부는 향후 유사사태 재발시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18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대응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20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지난 6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북한선박 4척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북한선박은 우리측 경고와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상부지시와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면서 제주해협을 통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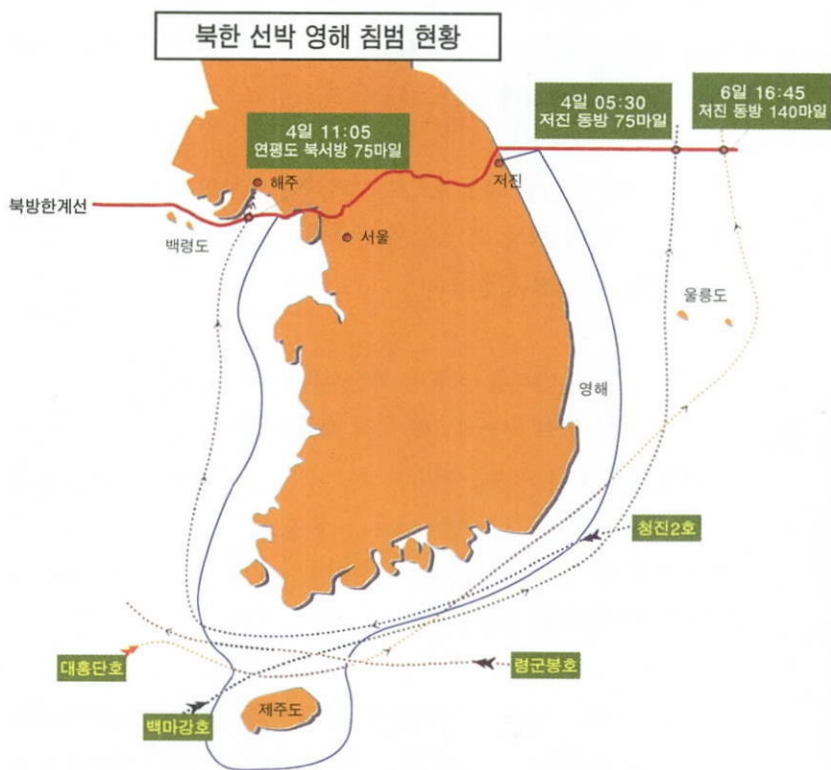
이중 1척(청진2호, 1만3,000톤급)은 우리 군이 진로를 방해했으나 북방한계선을 통과하여 해주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이 북한 선박에 대해 포위·근접시위·진로방해 기동 등을 통해 공해로 추방을 유도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6월 3일 국방부 대변인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6월 4일 통일부장관의 대북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단통과시 강력 대처」입장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신고할 경우 우리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영해통과를 허용할」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우리 당국과 군의 조치에 따라 6월 5일 이후 북한선박들은 「다시는 영해를 침범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이번 사건이 신속하게 일단락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배경은 군사적 의도보다

북한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의지와 경제태세 시험,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 획책, 북방한계선 무실화, 항로 단축을 통한 경제실리 추구, 무해통항권을 인정받기 위한 수순 등 여러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과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군사적 도발의도 보다는 일본과 중국을 내왕하는 선박들의 운행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선박이 우리 군·경의 통신검색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하였고 쌀과 소금을 적재하고 운항 중이었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무장 선박임을 들어 무해통항권을 거론하는 등 도발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에서도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1만톤급 선박이 제주도를 우회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통한 단거리 수송로를 이용할 경우 약 400마일의 거리를 단축하여 36시간 정도의 항해시간을 절약하며, 하루에 3,500불 정도의 유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제실리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영해침범 사태는 북한이 춘궁기를 맞아 식량사정이 워낙 다급한 실정에서 일본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지원 쌀 50만톤을 긴급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의도가 어떠한 북한선박이 우리의 영해를 무단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단호한 현장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시 강력 대처하겠다는 경고를 북한측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영해주권을 지키는데

우리 군은 6월 2일 북한선박 3척이 우리 영해침범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해군 초계함과 경비정을 투입하여 근접감시를 하면서 시각 및 통신검색을 실시하였으며 경고방송·포위·근접기동을 통해 항해를 지속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6월 3일 오후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 영해주권을 수호하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제주해협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에서의 북한선박은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우선적인 조치로 유엔사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과 재발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 군사정전위원회 소집을 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대북전통문을 통해 영해침범에 대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재침범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하고 사전허가 없이 영해통과는 불가하다는 점과 남북 당국간에 해운합의서 채택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영해침범을 계속할 경우 정선·나포·

추호도 흔들림 없이 대처했습니다

사격 등의 강력한 2단계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선 평화적 해결노력, 후 강경조치」의 수순을 밟아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 선박들이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 민용선박이었으며 군사충돌 의사가 없었던 점과 해상통행에 대한 국제적 규범으로 볼 때 사전조치 없이 무력부터 사용할 경우 나올 수 있는 국제적 비난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입니다.

또한 호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우리측 선박이 북한해역을 통행하고 있는 현실 등을 종합해 볼때, 경고사격 등의 무력조치부터 취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수단을 높여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으로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튼튼한 안보의 기초아래 긴장완화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변함없는 원칙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사적 도발의도 보다는 경제실리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적 해결을 1단계 조치로 추진하였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무력부터 사용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일관성이 없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6월 5일부터는 북한측 선박이 우리측 영해를 우회하여 통과함으로써 사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주 해협통과에 대한 북한측의 잘못된 인식도 교정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와같은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대처노력의 결과로 남북한 긴장을 확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군사적 강경조치를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었습니다



선례를 남겼으며 남과북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민용선박의 영해통과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비무장 선박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에서는 정선·나포·사격 등 즉각적 무력 응징론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사려깊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작전기간 동안 북한선박들은 우리 해군과 해경의 감시와 통제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발의 함포 사격만으로도 강제 정선이나 나포 등 강제 제압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무력사용은 주권행사의 최후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할 조건과 명분,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도발의도가 없는 비무장 민용선박에 대해서는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사건에서 충격이 일어나 인명이 살상되고 선박이 침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한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많은 국력을 소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일일이 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점을 다같이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영해에 대한 확고한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영해침범을

것은 결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닙니다

묵인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선박들을 검색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등 무력행사의 전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신중히 대처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6월 서해 연평해전 당시에도 우리 군은 7일동안 무력행사 전단계 조치를 통해 평화적 해결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측에서 무력도발을 해오자 우리도 무력으로 강력히 대처하여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상분계선에서 그것도 군함에 대해서 무력행사를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기된 비무장 민용선박에 대해 무력행사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보다 강경하게 대처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연평해전에서 보듯이 무력도발에 무력으로

국민의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우리의 안보에 대한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불용한다는 것이 대북정책의 제1원칙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서해에서 발생한 연평해전은 6·25 이후 가장 크고 위협했던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전쟁까지도 불사한다는 각오 아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했습니다.

역대 정부중에서 국민의 정부만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응징했고, 싸우면 이긴다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보여주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사를 되돌아볼 때 6·25 이후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아웅산 참사, KAL기 폭파 등 북한이 자행한 안보도전 행위에 우리 정부가 한번도 이를 단호히 응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안보전략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징한 것은 「국민의 정부」 뿐입니다

선불리 무력을 사용할 경우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됨은 물론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력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앞 뒤 가리지 않고 무력을 행사한다면 평화를 파괴하고 오히려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관련하여 「안보위기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한선박에 대하여 무조건 무해

북한 선박의 우리측 영해 통항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대해 북한 선박에게 무해통항권을 인정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해에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전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에게는 우리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선박 등이 상대측 관할구역에 사전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됩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우리 영해 통과시 사전 통고와 승인이 필요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해통항권 주장에 대해 이를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상호 해상통행이 완전히 봉쇄된 것이 아니라 상호 승인이 있으면 해상통행이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측 선박은 북한해역을 916회 통행하였고, 금년도 많은 선박이 북측 해역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도 1,013명의 우리 국민이 승선한 9척의 우리 선박이 북측 해역을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선박도 항로·시간 및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우리측에 사전 통보하면 관계당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

통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통보했다고 하여 모든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승인받은 선박의 통행도 우리측 군·경의 감시와 통제 아래 운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정부는 사전 승인받을 경우, 북한측 선박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남북간 선박운행의 객관적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6·15 공동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무해통항권 외국의 선박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향해하는 경우, 그 나라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그 관할수역에서 행하는 운항을 보장하는 제도. 즉 평화·질서·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국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부분에서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

[

정부는 향후 유사사태 재발시

정부는 북한측에 대하여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 분명히 전달한 만큼, 앞으로 유사사태 재발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간 해운협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운합의서를 체결, 상호주의에 입각한 선박운항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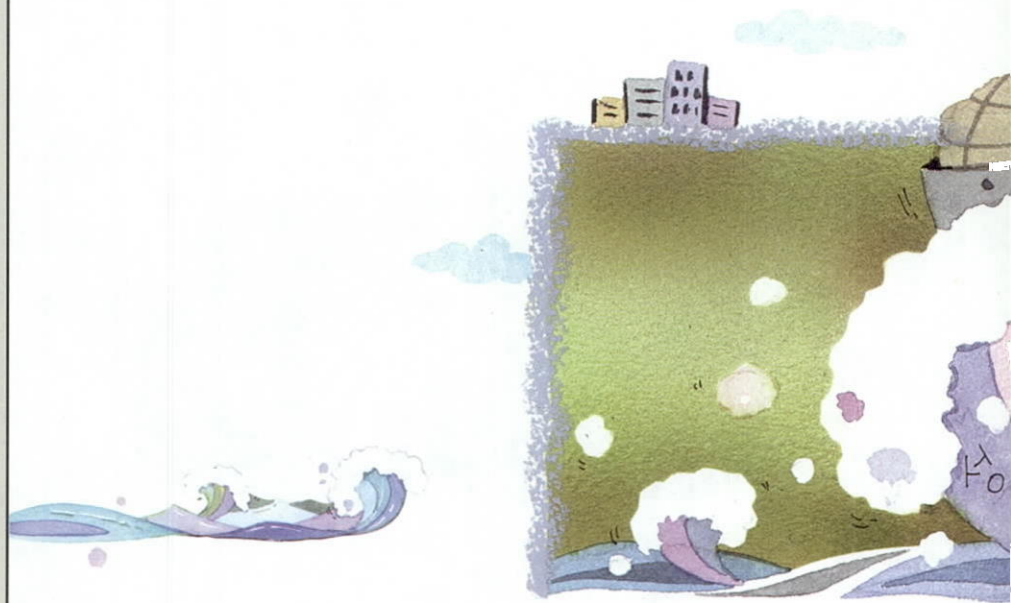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상호 통행·통신·통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대응과정

이번 사건 처리과정은 국민의 정부가 「튼튼한 안보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대북정책 기초를 반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단호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우리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순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성숙한 대북 상황관리 능력을 과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일부에서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대응의지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냉전적 대결구도로 되돌리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 공존공영의 통일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한단계 성숙한 대북관을 갖고 북한을 리드해 나가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